

제24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3. 13.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자녀·다문화 가정 및 불우 소외계층이 임실국민체육센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감면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 40% 감면조항 신설(안 제11조 제3호)

- 1) 3자녀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중 19세 이하 자녀
- 2) 다문화 가정의 19세 이하 자녀
- 3) 긴급복지지원사업 수혜가족과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안 제21조제1항)

3.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비규제)

마.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5. 1. 5. ~ 2015. 1. 25.)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 4)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40% 감면

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중 19세 이하 자녀

나.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의 19세 이하 자녀

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 수혜가족과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제11조제1항5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
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
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의 경우를 적용 한다.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
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손해
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
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제5호 -----

-----.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

<삭제>

① · 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
음)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임실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조항으로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 옥 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A 전북임실001		
정책명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자명	이차섭	전화번호 063-640-2573
주요 분석평가 내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 검토 의견> 참조</p> <p>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 40% 감면조항 신설(안 제11조 제3호)</p> <p>1)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부모와 19세 이하 자녀</p> <p>2)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의 19세 이하 자녀</p> <p>3) 긴급복지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 수혜가족과 차항위계층 한부모 가족</p>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p>개정안의 이용료 감면대상에 40% 감면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대상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을 확대한 것은 저소득층에 여성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분 규정에는 동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항임. ▪ 6조 이용의 거절 및 퇴장 조항의 6호에 유아1명과 보호자 함께하는 경우 거절 및 퇴장에서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하 자녀를 2인 이상 동반하는 경우도 많음. 자녀 중 6세 이하 유아가 2명 이상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6세 이하 자녀동반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여성들이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동을 1인으로 제한할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이용을 제한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이용 제한으로 나타날 것임. 따라서 유아의 경우 부모 동반 시 이용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용료 감면혜택 부여 시 5호의 경우 가임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영장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월 1/4 또는 1/5 정도임. 따 		

	<p>라서 이를 고려하여 10% 감면혜택을 명시하고 있으나 임실군 주민등록자의 경우 20% 감면혜택을 적용하면 5호는 감면효과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5호의 경우 중복적용에서 예외조항으로 하여 30% 범위 내에서 중복적용을 가능토록 단서를 달거나 5호의 감면비율을 25%로 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권이나 회원권 발행시 이를 성별분리통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반 별지서식에 성별구분란 및 성별분리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서식 수정이 필요함.
<p>검토의견 반영 결과 (공공시설관리사업 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6호 답변: 수영장의 특수성(사고위험)을 감안하여 유아 1명 보호자 동반 이용함이 타당하여 수용 불가. 2. 제11조(이용료의 감면) 5호 가항목 10%감면 답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입여성에 한하며, 수영장 이용객 60%이상 가입여성으로 25~30%이상 감면은 임실군 재정여건상 수용 불가.(단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남녀 구분 없이 20%감면) 3. 이용권이나 회원권 발생 시 성별분리통계 명시 답변: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 5호에 따라 회원들을 전산관리(카드 및 전표)하고 있어 성별구분 및 성별분리통계 작성이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1월 28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임실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p> <p>분석평가책임관 귀하</p>	

관련(상위) 법 발췌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보험 가입) ①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